

#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567
----------	------

2024년 2월 27일  
교육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-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년 2월 5일, 이효원 의원
- 회부일자 : 2024년 2월 7일
- 상정일자 :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 
(2024년 2월 27일 상정, 원안가결)

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이효원 의원)

### 1. 제안이유

- 금년 5월 17일 시행 예정인 「국가유산기본법」,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의 제·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의 “문화재” 용어를 “국가유산”으로 변경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에 ‘문화재’를 ‘국가유산’

으로 수정함.(안 제7조제2항).

- 나.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에 일부를 ‘「국가유산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’로 수정함.(안 제2조제1항제1호).

### III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창범)

#### 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일괄개정조례안은 2024년 2월 5일 이효원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567호로 발의되어 2024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일괄개정조례안은 “문화재” 용어의 통칭을 “국가유산”으로 변경하는 등 새로운 국가유산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위법 정비사항을 서울시교육청 소관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.

#### 2. 주요 검토의견

##### 가. 일괄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

- 현재 문화재의 정의 및 분류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「문화재보호법」이 개정<sup>1)</sup>되고 「국가유산기본법」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‘문화재’가 ‘국가유산’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금년 5월 17일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.
- 동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제·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개의 조례에 사용된 “문화재” 용어를 “국가유산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일관성 확보 및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의 모순 방지 측면<sup>2)</sup>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생각됩니다.

1)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248호, 2023. 3. 21., 일부개정]

2)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(법제처)

## 나. 개정 조문에 대한 검토

- 안 제2조는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」 제7조 제2항 중 “문화재”를 “국가유산”으로, 안 제3조는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」 제2조제1항제1호 중 “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”를 “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3조<sup>3)</sup>에 따른 국가유산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또한 안 부칙은 동 일괄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「국가유산기본법」의 시행일인 금년 5월 17일로 정하고 있는바, 이는 법체계의 정합성 유지 측면에서 동 일괄개정조례안에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일괄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혔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1917, 2024. 2. 16.)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V. 토론요지 : 없음.

VI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.

VI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.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---

3)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국가유산”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·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·예술적·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·자연유산·무형유산을 말한다.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국가유산체제 전환으로 문화재 등의 용어가 국가유산 등의 용어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중 이에 관한 규정을 일괄하여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「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7조제2항 중 “문화재”를 “국가유산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2조제1항제1호 중 “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”을 “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